

신바람나는 직장, 우리 힘으로!

공직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곳

그곳에,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추진 검토(안)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지급 추진 검토안

I 목 적

-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행정안전부 예규 102호 2020.1.22.) 개정으로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따라,
-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지급으로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격무·기피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및 직업만족도 향상과,
- ◆ 2021년 예산 반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고취.

II 선정기준

-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이 높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0% 범위 내)
- 선정기준 : 기관 및 학교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격무·기피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포함.
-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운영위원회 위원에 노동조합 추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III

개선방안

-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지급 요구
- 예산액 : $3,972 \times 10\% \times 398\text{명} \times 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477,600,000원
- 지급대상 :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 우선순위 : 교육공무직 인사 및 급여담당자, 사서 민원업무수당,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운영 및 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전산직) 등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
- 주관부서 : 행정과

IV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9 제11호 차목)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행정안전부 예규 102호 2020.1.22.)

(7)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3조의5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 근무공무원 포함)

(나)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8)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공무원

(9) 공립유치원,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0)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 제11호 차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등이 높은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정원의 10% 범위 내)

(다)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

② 중요직무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③ 중요직무급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④ 중요직무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라)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내용

① 중요직무 선정기준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④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격무·기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음

②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④ 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

③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⑤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④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월지급 상한액 >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6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100,000원

④ 지급기간

⑨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상·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⑩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⑪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⑫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운영시 유의사항

①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 마련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실·국·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 지급하는 행위(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국·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